안전등급의 지정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 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인명피해 10명 미만 이재민 10명 미만 재산피해 5억 미만 대화재 (인근 건물로 연소 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 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발령권자 (소방서장) ※ 서장 부재시 현장지휘대장	 인명피해 10~20명 이재민 10~50명 재산피해 5억~10억 인명대피 100명 이상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시 다중이용 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방생시
대 응 3단계 발령권자 (본부장, 본부지휘대장)	 인명피해 20명 이상 이재민 50명 이상 대피인원 200명 이상 재산피해 10억 이상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다중이용 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